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의제: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일(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편 발송된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에 대한 항소 번호 인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를 고려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 앞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고용주)는 일 항소 서류 번호 의 항소 심판 결정에서 항소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원고) (고용주)는 일 (그의) (그녀의) (그것의) 항소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고) (고용주)가 항소를 철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관된 어떤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의) (그녀의) (그것의) 항소 철회에 대한 (원고의) (고용주의) 요청은 **수여됩니다.**

항소 결정 번호 에 (원고) (고용주)가 입력한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은 **최종적입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2 페이지 중 2

평가 위원회 위원 Keith A. Holliday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  
위원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